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88
----------	-------

발의연월일 : 2018. 10. 26.

발의자 : 황주홍 · 원유철 · 장병완

송옥주 · 이찬열 · 이용주

박주현 · 김중로 · 김종회

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 제3항 제8호).

법률 제 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8호 중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 기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요양급여) ① · ② (생약)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약) 8. 의지(義肢)·의치(義齒), 안경·보청기 등 <u>보장구</u>의 처방 및 구입 ④ · ⑤ (생약)</p>	<p>제36조(요양급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장애인 보조 기구</u> 고----- ④ · ⑤ (현행과 같음)</p>